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1996. 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IV 분합
(호A18-103)

일 / 러 / 두 / 기

-<인권하루소식> 합본 VI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1. <인권하루소식> 여섯번째 합본호는 95년 10월11일-96년 6월29일 사이의 지령 501호부터 674호까지를 담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에 1번씩 묶는다.
2. 본문은 오자와 수정을 본 것 외에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실었다.
3. 본문 색인을 부록으로 실어 이용하기 편리하게 묶었다.
4. 이번 호에는 머리글로 96년 상반기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실어 그동안의 인권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5. 지난 3월에 열린 52차 인권위원회 회의에 대한 유엔 보도자료를 「한국국제문제연구회」(회장 이창수)와 「인권운동사랑방」의 공동번역으로 실었다.
6. 여기에 실린 기사나 기초자료로 부족한 독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자료실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1996. 9.

인권운동사랑방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장 호 순

언론학 박사,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96년 7월 12일자 서울발 뉴욕타임즈기사는 김영삼 정부가 이미 승리한 이데올로기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남한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해 보도했다. 북한정권이 붕괴일보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공포에 기반을 둔 공안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96년도 하반기 인권상황을 돌이켜 볼 때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시대착오적 이념탄압과 폭력적 억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이 명확하다. 뉴욕타임즈 기사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권위주의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인권운동가들로서 우리는 왜 이런 인권탄압이 계속 자행되고 있고 어떻게 이를 막아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왔다. 이에 대한 해답은 장차 이 땅에서 어떻게 인권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지표를 설정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고 지난 수년간의 우리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할 것이다.

80년대 인권침해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그들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인권탄압의 양상이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에서의 인권침해는 이제 정권안보 차원의 선전도구를 사용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 스스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관습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인권침해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독자적 사회세력들이 형성되었고 다수 대중들은 인권침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가치판단을 부여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인권침해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계속 옹호하려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이용과 더불어 공안기구들이 자기 부처의 존속을 위해, 자신들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의 단맛을 계속 맛보기 위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 투쟁경력을 자랑하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인권탄압을 막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력을 수식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심지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도 서슴없이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묵인하고 있다. 인권유린이 죄악시되기보다는 정권쟁취와 유지를 위한 불가

피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인간을 도구화하는데 익숙해진 지금의 사회상황에서 인권이란 거추장스러운 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질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권운동도 과거처럼 이데올로기 차원이나 정권안보 차원에서만 인권침해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사회구조적 요소들을 지적하고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소위 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인권운동이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인권운동을 인권탄압 공간기구의 제거라는 적극적 인권운동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기존의 수비적, 방어적 운동의 형식을 탈피하지 못한 점이다. 즉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권침해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이 세워놓은 인권탄압 장치들을 분해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는 어정쩡하게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한 검증이나 비판과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 중산층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범주의 인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물론 인권개념이 의식화되지 않은 다수 민중들에게 인권이란 것이 양심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그들의 환경권, 교통권, 거주권 등으로 인권의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개념의 확대가 인권운동의 초점을 흐트러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인권운동의 저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운동의 내적 기반이 허약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할 때 생기는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영삼 정부 3년 동안 인권탄압의 빈도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나 국민의 반응이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권운동의 효율성과 그 방향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조건 과거 지향적으로 사상의 자유나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만을 물고늘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적, 3차적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창설이후 지난 3년간의 기간이 변화하는 정치적·사회적 조류에 맞춰 인권운동의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인권운동의 핵심적 목표를 확정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택해 실천해야 할 때이다. 물론 인권운동은 원칙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다. 시류에 따라 편의에 따라 운동의 이념과 원칙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과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인권운동이 그저 지난 3년간 해왔으니까 그 의미나 실효성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타성적, 반복적 운동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여론형성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권운동은 회원에 기반을 둔 조직적 시민운동이라기 보다는 여론형성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다수 중산층에게 접근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여론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특히 새로운 각도에서 다수 시민들에게 인권문제를 각인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우리사회의 엘리트와 중산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엘리트층과 중산층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권익보호를 주요 인권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단지 민중의 인권침해가, 급진좌익의 인권침해가 중산층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사회 전반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될 뿐이다. 즉 이들에게 인권이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중산층과 엘리트층의 지지를 통한 여론형성기반이 조성될 때에야 비로소 인권문제를 선거이슈로 삼는다든지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여론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권보호의 역사는 소수의 압제에 대한 다수의 투쟁이기도 하였지만 다수로부터 억압당하고 외면받은 소수의 투쟁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소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다수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권운동이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여기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단기적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고 승산이 높지도 않아 좌절하기 쉬운 운동이다. 독재정권이던 합법적 형식을 갖춘 정권이건 간에 국가권력에 대항해서 소수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인권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기본적으로 이기기 힘든 운동으로 늘 승산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하는 운동이다. 인권운동은 언젠가는 승리하리라, 언젠가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판명이 될 것이라는 자기 도취적 신념에 기반을 둔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인권운동은 억제되지 않은 국가권력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회적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힘이 국가권력에 필적할 만한 힘이 될 필요는 없다. 인권침해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다수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인권운동의 본질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적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권운동에 대한 본질을 더욱 철저히 이해하고 더욱 창의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4·11 총선에 휘말린 과거청산

김수경(인권하루소식 편집인)

1. 들어가며

‘문민’ 정부라는 구호를 내걸고 나선 김영삼정부의 임기가 이제 말기로 접어들고 있다. 문민정부라는 말은 단지 대통령이 과거군사독재 정권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뽑힌 데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 진데 이제는 그 의미를 뺀다면 그 어디다도 문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상반기 인권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해 진다.

올 상반기도 여느 시기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96년 상반기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노 전대통령을 비롯한 12·12와 5·18 관련자의 처벌일 것이다. 세계의 눈이 쏠린 재판이자 불처벌의 대표적 사건인 5·18의 법적 심판은 인권운동은 물론 모든 사회 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임에 분명하다. 모든 진보적 운동의 발전이 이러한 과거 청산의 방향과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상반기 동안 큰 무게를 가진 것은 4·11 국회의원 선거였다. 그리고 선거를 거치면서 역사적 재판이라 떠들썩했던 그 사건은 자의든 타의든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고, 구속당시 가졌던 여론의 힘은 잠시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듯 96년 상반기 동안 국민들을 마취시켜 버린 4·11 총선은 바로 상반기 인권상황 평가에 중심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선거는 빠짐없이 공안광풍을 동반해 왔다. 소나기가 쏟아지기전 먹구름이 깔리고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불어닥친 바람에 거리는 온통 먼지와 휴지, 빈깡통이 나뒹굴 듯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다. 그 속에 많은 문제들이 희석되고, 왜곡되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작년 하반기, 삭발한 채 명동성당에서 애간장 끓는 가슴을 움켜잡고 밤을 새가며 학살자 처벌을 외친 광주시민들, 교수·의료진·종교인 할 것없이 대한민국 모든 민주세력들은 5·18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생겨나고 5·18 특별법 제정과 전노 전직 대통령 등의 구속으로 이어져 갔다.

그러나 광주문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전원 처벌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진행된 이 사건은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동면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2천여 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학살자는 밝혀지지조차 않은 채 개인적 범죄차원으로 축소·음폐되고 있다. 반성과 사죄를 전혀 모르는 피고인은 이 재판을 ‘정치적 차원의 보복’으로 맞받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이들이나 그 당사자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 구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을 믿지 않는다. 불감증에 걸려버린 듯 이제껏 범죄자들이 밟아온 것처럼 얼마 안가 ‘사면’으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것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를 입막음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침해가 벌어질지 어깨를 움츠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자.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유행어처럼 퍼진 ‘삶의 질’은 이제 더 이상 건전한 시민운동의 용어만은 아니다. 지난 몇 년새 세계화·국제화라는 구호가 모든 문제의 화두가 되었듯이 4·11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정부를 비롯해 기업인, 정치인들 역시 선전전략용으로 ‘삶의 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중의 생존권은 그들이 말하는 삶의 질에 대상에서 벗어난 채 길바닥에 죽음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한겨울 살인적인 철거작업이 여기저기서 진행되는가하면, 핵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속되는 등 소외 받은 자들의 환경권, 생명권 투쟁은 감옥의 차가운 철창에 갇혀버렸다. 우리는 이렇듯 희석되어 버린 ‘삶의 질’이라는 말에 다시 확고하게 사회적 기본권의 쟁취라는 의미를 불어넣어야 한다.

한때 일부의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개혁위원회는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출범시기 우려를 적중시키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진 악랄했던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거 개발독재의 손에서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노동법 개정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변화하는 자본의 세계질서에 맞춰 노동착취 체계를 재편성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는 듯 보인다.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가 어느 것하나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노사개혁위라는 합법의 틀을 이용해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청와대 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언제나 ‘개악’이었다는 한 노동계 지도자의 말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이제 노사개혁위원회는 세계변화 속에 우리 노동자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그럴싸한 말로 다시금 노동자의 목줄을 죄고 있다.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제, 해고정리제 등은 노동자를 개별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고도화된 자본의 공세 속에서 노사간의 대립은 하반기 노동투쟁의 접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반기도 계속적인 저항도 신공안정국이 진행되었다. 언론매체를 독점하다시피 한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역시 ‘선거용’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공안 사건이 넘쳐났다. 95년 12월 29명의 대량구속자를 낳은 범민련 사건, 부여 간첩 김동식 사건과 간첩을 만

나고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 혐의로 연루된 허인회·이인영 씨, 김동식이 지령과 무전기를 전달하고자 했던 박충렬, 김태년씨 등의 구속 사건은 야당 표를 깎아내는 효과를 심분 발휘하고도 남았다. 그후 계속해서 정부나 수사기관은 공공연히 '좌경척결, 불법 시위 근절'을 외쳤고, 이러한 강경 단속방침과 때를 같이 해 터진 조직 사건들은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위축시켰음은 물론 민주 사회의 기본어야 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계속 압박했다.

이러한 진보세력 목조르기 작업 속에서 우리사회는 자본주의의 치부인 물질만능주의와 사회에 대한 무관심, 개인이기주의등으로 혼탁해져 갔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상반기말 집중적으로 터진 성폭력 사건은 이 사회가 끝간 데 모르는 물질만능과 알파한 성적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락의 길을 가는 길목에 있음을 드러냈다.

2. 주제별 인권 상황

1) 전노 재판과 '역사바로세우기'

① 전노 재판과 범국민대책위 활동

작년 하반기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범국민단일안의 발표 등은 5·18 특별법 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는 광주 문제 해결의 5원칙으로 ① 진상 규명 ② 책임자 처벌 ③ 명예회복 ④ 피해 배상 ⑤ 정신계승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노 전직 대통령등의 구속은 온 국민에게 흥분과 기대를 갖게 했다. 전 노의 재판은 김영삼 정부의 과거 청산 의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첫 공판이 지난 3월11일 열렸다. 당일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 12·12와 5·18의 총체적 진상 규명과 책임자 전원 처벌 △ 80년 국보위 참여 인사의 청산과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보법, 노동 악법 철폐 △ 5·18 관련자의 총선 출마 기도 중단 △ 최규하 전 대통령의 중단 촉구 △ 5·18 내란 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금까지 20여차례의 공판을 지켜보면서 과연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회의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진상은 밝혀졌는가, 그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았는가, 희생자들은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받았는가. 오히려 "광주 사태는 초기 진압 실패로 시민과 계엄군 측의 감정이 격화됨으로써 일어난 유혈극이다. 때문에 진압 직후 최규하 정부나 계엄사가 현지 지휘자에게 지휘 책임을 물었어야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피고인의 석방 문제까지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② 미국의 광주 개입 폭로

2월 초 미국이 80년 광주 진압에 개입했음을 알리는 <저널 오브 커머스>의 탐사록 기자의 기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며 놓았다. 미국 정부 문서들은 미국이 안보지상주의 시각으로 12·12전후부터 줄곧 전두환이나 정치 군부와 긴밀히 협조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카터행정부는 최고위 비밀 정책 팀을 만들어 80년 5월 7일 전두환씨의 군부대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 5월 8일 이를 전두환 씨에게 통보하였고, 5월 22일 백악관 고위 참모 회의에서 전 씨의 광주 진압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5·18의 책임이 없다고 나섰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 측의 반성 없음은 물론 외무부 역시 문제의 문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③ 광주 항쟁 피해 사례 학술적 검증

16주기 광주항쟁 행사 기간인 지난 5월 25일 광주에서는 주목할 만한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5·18 민중항쟁 피해자 15년 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변주나(전북대의과대학 교수)는 1백31명 조사 결과 이들 피해자들이 지난 15년간 건강(입원, 사망), 가정(이혼, 별거), 직장(실직), 주거지역(도시에서 고향으로, 전세에서 셋방으로) 순등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나타낸 것을 비롯해, 피해자 군에서 비피해자군보다 6배가 높은 불안증과 3배가 높은 우울증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신체증후군치도 2.1배 높게 나타났으며, 총상 피해자(몇 명 확인요) 중 탄알 보유자 11.7%, 파편 보유자 11.7%, 파편과 탄알 보유자 23.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의 피해는 한 사람의 일생을 너머 가족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는데 아직도 책임자는 심판대에 있지 않다. 법정에서 선 16명이 2천여 명이나 되는 광주시민을 학살했는가. 이들뿐 아니라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은 물론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한 이들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공여지문제로 확산된 반미의식

미국의 광주 개입이 실제로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 반미의 뿌리는 더욱 깊어져 갔다.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해 계속 싸워 온 한미행정협정 개정 문제와 함께 공여지 문제를 들고나섰다. 공여지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66년 주둔군 협정을 체결할 당시 아무런 보상 절차 없이 공여지로 사용한다는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주둔군협정에 따라 전용사용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멋대로 제한하더라도 미군을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여지의 정확한 면적은 알 수 없다. 더욱이 국방부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그러나 재산권 및 생명권의 심각한 위협인 이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쇠목 마을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는 광주 학살 개입에 대한 미국의 공개 사과, 정부의 광주 문서 공개 및 진상 규명, 미군 범죄에 대한 사과 및 불평등한 한미행협의 전면 개정, 미군기지의 반환 및 사용중인 기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대 외교 청산등 강

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피해 당사자의 법률적 도움을 위한 법률구조 센터를 마련했다. 이후에도 일 개인의 성폭력이나 살인에 대한 미군 범죄 처벌 차원이 아닌 재산권과 직결된 공여지문제는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3) 노동운동의 변화

올해 역시 국제 노동 기구(ILO), 52차 유엔인권위에서는 한국 정부에 제3자 개입 금지 철폐, 복수 노조 인정 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뿐만이 아니라 국제 자유 노련(ICFTU)에서도 7월초 김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양규현 민주 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50여명의 석방과 1천여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였다. 제3자 개입금지법의 폐지가 활발하게 거론되는 시점에서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현대 중공업, 한라중공업 등에서 연달아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조의 작업중지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입단협의 주요 사항으로 작업중지권이 요구되고, 몇몇 사업장에서 이를 인정하자 경총에서 '작업중지권은 기업주의 고유 권한'이라며 해고자복직 등과 함께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나서기도 했다.

97년은 이주 노동자의 해이다.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가입 운운하며 선진국의 진입을 얘기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해를 맞아 세계 인류를 표방하는 우리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어떠한지.

또한 올해 노동계에서 특이할 만한 사안 중의 하나는 5월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 개혁 위원회의 발족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개위에서 다뤄지기도 전에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에서 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히고 나서는 등 노개위의 중립성과 공정성 부분에 있어 우려점을 낳고 있다. 이렇듯 한편에서는 노사 개혁 의지를 보이는 듯 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노개위를 통한 변화를 얘기하는 순간에도 노동부는 공공부문노조등의 쟁의 시기 집중등 연대 투쟁과 관련해 불법 파업과 제3자 개입금지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엄중 대처키로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다. 이어 6월 13일 검찰과 공안부에서는 제3자 개입, 연대 파업, 준법 투쟁 등 불법 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렇듯 정부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① 해고노동자 복직

「공공서비스 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투쟁 위원회」와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6월 10일 현재 공공 부문 해고 노동자는 2백42명으로 이중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동안 해고된 노동자가 1백62명이다. 이는 6공 정권 5년동안 해고된 83명의 2배에 해당되며, 94, 95년 공공 부문에 대한 노동정책은 군사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량 해고와 구속 남발한 것을 알 수 있다.

93년 복직을 신청한 1천5백여 명의 해고 노동자 중 아직도 미해결된 노동자는 1천여

명 이상을 육박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해고자복직문제는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6월10일에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해 명동 성당 철야 농성 돌입하는 등 전국에서 해고자복직을 위해 피나는 투쟁을 벌였다. 이 결과로 창원 삼미특수강 8명, 공공부문 해고자 20-30명 복직 등의 성과를 이뤄 내지만, 아직도 공공부문 해고자 약 5백60명(전교조 3백52명 포함)을 비롯해 1천여명 해고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해고자 복직 문제는 5, 6공과 김영삼 정부의 노동 배제 정책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즉각 단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3년도 노동부 복직 신청 노동자 미복직 현황
(자료제공 민주노총)

지방청별	사업체수	해고자수	복직 및 해결자수
계	510(개소)	1,599(명)	586(명)
서울청	165	450	146
부산청	77	412	176
대구청	66	178	35
인천청	121	380	186
광주청	61	150	29
대전청	20	29	14

② 제3자 개입금지

연초 국내 법학자 72명은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인정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등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인 것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미 정부는 93년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한 답변에서 "그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제적 노동 기준에 합치되게 노동법 개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신 군부의 5.18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아무런 권한과 선례도 없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조항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유엔인권위에서는 몇 년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철폐, 복수 노조 금지 규정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직권 중재 제도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보장등 권고하고 있다.

이와중에서도 1월 권영길위원장, 2월에는 양규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지도자들이 제3자 개입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2월 6일 현재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구속된 8명을 포함해 노동 관련으로 35명 구속되었으며 수배자는 13명이라고 한다.

③산재와 작업중지권

올해초 노동부는 95년 산업 재해자 수(5인 이상 사업장)가 7만8천 34명(사망 2천 6백62명)으로 산재율 0.9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의 『94 산업 재해 분석』에 의하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임금은 낮으며 산재 발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월 3일 민주노총이 99개 소속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산재의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재해발생자 1만1백54명 중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가 무려 72.48%(7천3백60명)로 산재 보험 처리 재해자 2천7백94명에 비해 무려 3.6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94년 한해동안 조선업종 전체에서 34명 사망했으며, 95년에는 50명 사망 해 1주일에 1명씩 사망하는 꼴이었다고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4월 2, 3일 연이어 노동자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으며, 전남 영암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에서 한달 새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입는 중대재해 발생 등등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면서 작업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떠올랐다. 금속 연맹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6명의 노동자 사망하고, 3백30여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하며, 4명이 직업병에 걸리고 1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산재 예방은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리한 작업 강요를 막을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④ 해결은 없이 인원만 추가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 5년.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15만명 이 중 8-9만 명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작년 1월 네팔인 산업 연수생 10여명의 명동 성당 농성은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던져 주었다. 그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의 산업 재해와 의료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부는 “저임 인력난 해소를 위해 2만 명에서 추가로 1만 여명의 산업 연수생을 더 들여오고, 이들의 연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해결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7월 7일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모두 16만7천5백63명이며, 이 중 59.8%인 10만1백48명이 불법체류자였다. 국내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해 7월말 6만1천4백72명에서 불과 열 달만에 62.8%나 급증했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도 지난 해 7월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뒤 열달새 68%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한겨레신문 7월 8일자 참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하반기에 3만 명의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을 추가 입국할 예정이어서, 연 말경에는 외국인 취업자가 2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오스만씨의 자살(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하루빨리 출국해야 했던 불법체류자 오스만씨가 불법 체류에

다른 2백만 원의 벌금이 없어 목매달아 자살, 93년 한 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징수한 벌금 액수 1백억3천만 원이라고 한다)에서 문제 제기된 벌금 제도나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 제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하는 등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해 온 성남 외국인 노동자 집 등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이후 전개될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보인다. 지금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은 새벽3시에 자다 말고 일하는 등 하루 16시간 노동을 하고 월급 4만원이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복지 정책의 현주소 ‘신연속씨 사망 사건’

해를 넘기면서까지 정부는 OECD 가입을 목청껏 가입 의지를 외쳐 오더니 드디어 ‘연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면에서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94년 11월 삼성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 나라는 OECD 가입한 25개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공교육비가 23달러로 23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5명으로 26위, 문맹률은 3.7%로 21위이며, 환자 1천명당 의사 수는 0.73명으로 26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보건 사회 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삶의 질은 세계 174개국 중 종합 평가 32위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GNP 사회보장 비율을 비교해 보면 94년 에 2%인데 반해 스웨덴(1992) 24.1%, 덴마크(1990) 18.7%, 미국(1992) 6.9% 등이다. 정부는 중앙 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 부문 세출 규모를 중앙 정부 전체 예산중 10%된다고 보사연은 발표했다. 이는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 태국(10.4%) 방글라데시(12.3%)에도 못 미치는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세출 규모를 놓고 대체로 115위 수준으로 평가했다(시사저널 2월22일자 참조). 이러한 현실에서 OECD의 진출 여부만을 놓고 우리의 경제·문화·복지 수준을 얘기한다는 것은 숲은 접어 둔 채 나무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각 당의 사회복지 공약이 함량 미달이며, 각 당 공약의 단계별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20세기의 마지막 유엔 회의라 불린 제2차 세계 주거 회의가 지난 6월 이스탄불에서 전 세계 1백30여개국 2천1백개 민간단체, 5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민간단체들은 그간 준비 회의를 통해 줄곧 “주거권의 문제는 단순한 주거나 주택문제가 아닌 삶의 공간 보장”이라며 토지의 공공성 주장하였다. 특히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각국의 토지, 기후, 환경 등의 상황에 따른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민간위원회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은 뜬구름뿐, 민간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국가 보고서, 입장 문서 등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몇 차례 요청을 했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비동맹국들과 미국·일본간에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큰 논쟁거리로 떠올랐으나 결국 한국 정부 역시 ‘주거권’을 합의하는 성과를 남기고 폐막되었다. 주거권(Housing Rights)을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범 지구적인 행동에 옮길 것을 확정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길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지난 2월 초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철거 과정에서 고공 철탑에서 불길을 피하다 숨진 신연숙씨 사건은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냉혹한 정부의 철거 의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 지난 2월 5일 새벽 경찰과 대치 중이던 강제 철거 감시 철탑에 화재가 발생해 철탑을 지키고 있던 주민 5명 가운데 불길 피하기 위해 18미터 아래로 몸던졌다가 신연숙(38)씨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씨의 남편 권정택씨는 당시 철거 용역 반원의 집단 구타로 척추를 다쳤고, 결국 신씨는 딸 둘(고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5학년)과 아들(7살)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고공 철탑 농성 1백38일째 되는 날 이런 일 발생한 것이다. 「철거민 고 신연숙열사 학살 책임자 처벌 및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싸웠지만 수원 지검 신용간 검사는 긴급 구속된 호삼개발 관계자 6명 중 현장 개발 소장 한 사람 만에게 영장을 청구했을 뿐,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벌였을 뿐이다.

5) 국가보안법

2월 23일 김영삼대통령 출범 3주년 맞아 특별사면 복권 단행했다. 그러나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16년째 복역 중인 석달윤(62)씨가 무기에서 20년형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 완전히 제외하였고, 법무부가 5월 석탄일 맞아 6백71명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감옥에는 40년째 구금 중인 우용각(68)씨를 비롯한 20년이상 복역한 초장기수가 23명, 7년이상 복역 중인 장기수가 64명에 이르고 있다.

민가협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93년 2월25일부터 96년 7월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9백45명이다. 이중 국보법 구속자는 전체의 49.7%인 9백68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7월10일 현재 96년도 구속된 양심수는 3백52명으로 이중 국가보안법 관련자는 1백90명에 속한다. 또한 국보법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이 대부분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혐의였다. 이 부분에 대해 “그 행위들이 특별한 조건을 통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막연한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진다.

연도	93년	94년	95년	96년	합계
총구속자	195	775	623	352	1945
국보법	105	389	284	190	968

해가 갈수록 국가보안법에 대한 탄압은 사그라지기는커녕 더욱 잦아지고 있으며, 마치 뿌리째 뽑아 말려 죽이기를 연상케 한다. 지난 5월 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 관계 장관 회의 열어 이후 발생하는 집단 민원인의 불법 시위와 학생 및 재야 단체 운동

들의 과격 시위에 대해 원천 봉쇄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집회에 공권력을 총동원할 뿐 아이나 컴퓨터 통신과 도서 등을 통한 이념 확산을 막고 가칭 학원대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이념 문제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정부 구호를 높이 외쳤던 과거의 재야 운동이나 학생운동은 문민시대 대중의 정서에 맞게 운동의 양상도 합법적 운동의 테두리 내에서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국가 전복을 피하는’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단체 구성·가입이나 고문·찬양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을 보면 여전히 대형 조직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① 박충렬씨 사건

안기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 박충렬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 당시와는 다르게 국보법상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 지검 조성욱검사는 1월8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보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소지 탐독) 등의 혐의로 기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측 “이 질문은 공소사실과는 하등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합 통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안기부와 검찰의 약점을 감추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4월 서울지법(유석원판사)에서 열린 박충렬씨 구형 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 국보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해 악의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는 7월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 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물증 없이 구속을 남발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② 사노맹

7월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호남위원회 재건 혐의로 6월초 구속되었던 이호성(28)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광주지법이 받아들이는 등 사노맹 ‘재건 기도’ 혐의로 구속된 재야 회원 10여명이 모두 풀려났다. 광주 지검 공안부는 당초 ‘재건 기도’ 혐의를 ‘동조’로 바꾸더니 사노맹이 94년 4월 공식 해체 선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조 혐의마저 입증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시 ‘북한에 동조했다’는 식으로 공소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구속 수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한겨레신문 7월5일자 참조). 이러한 무리한 인신구속과 공소 내용 변경 등은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오래 전에 합법 출판된 『세계철학사』 『국가와 혁명』 등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문체삼았기도 했다. 5월 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권순미씨 재판에서 검찰 국보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 선고한 것이다. 이밖에도 사노맹 관련자들에게 과거 행적을 묻는 구속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③ 범민련

검찰은 범민련 강희남(76. 범민련 상임의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작년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20여명의 범민련 사건이 발표된 데 비하면 어처구니 없이 낮은 형량이다. 대부분 70세를 넘는 고령인 이들에게서 뚜렷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범민련 사건이 던진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무리한 구속수사로 인한 건수올리기, 사회 분위기 조장 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6월5일 범민련 강순정 씨가 범민련 간사와 함께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④ 기타

국가보안법 구속 사건에서 올 상반기에도 역시 학생 관련 조직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사회주의민주청년연맹 사건(9명 구속, 2명 수배) 서울대 노나매기사건(8명 구속) 민족민주학생연맹(군인 5명 구속) 사회주의학생연합(16명 연행) 전국학생정치연합(11명) 남총련 민족해방군(속칭 오월대)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6명 구속) 전국학생투쟁연합(3명) 전남대 출신을 중심으로한 자주대오사건(13명) 등등 정부의 좌경소탕 작전 발표로 더욱 활발해진 양상마저 보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가입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건은 이미 조직이 해체된 상태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취직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해마다 터지는 중부지역당 재건 사건이 올해 역시 터졌다. 1월 9일 중부지역당(남한조선노동당) 재건 혐의로 강원지역 활동가 김동규(29)씨등 9명 긴급 구속되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5명 무혐의 처리, 2명 국보법 위반 구속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4월 24일 13명이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한국노동청년연대(의장 이기주) 사건,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서형준(32. 직장인)씨를 비롯한 3명 사건 등이 터지지만 이들에게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해 조사 활동을 벌이고 간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52차 유엔인권위에 제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강력히 권고하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 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된 셈이다.

6) 주목해 볼 만한 판결들

▲ 95년 12월 16일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에 대해 준항고 결정(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이 내려졌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

의 인권 보장과 방어권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행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 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판결했다.

▲ 1월 25일 대법원은 9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납입부 피의자 석방 제도' 시행 방안을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나 증인 등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일정 보증금을 내면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로써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 3월 5일 서울 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판사는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다. 이때 헌재는 "국보법 제7조(찬양, 고무)와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국보법 제19조의 구속 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 6월 21일 즉심피의자를 경찰서안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즉결심판의 피고인인 경우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서 즉결심판자대기실에 유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을 받을 때까지 10시간 가량을 즉결 심판자 대기실에 불법 감금한 것은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상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5백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7)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①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사망 사건

도시 환경 미화를 이유로 벌어진 아암도 노점 철거 작업중 이덕인(당시 28세)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 연말 발생했다. 장애인 노점상, 빈민 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측이 '타살'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덕인 씨의 사인에 대해 종교·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팔과 손목에 묶인 줄이 포박의 형태라는 점 ▲의사체로 보기에 등쪽에 아무런 상처나 이물질이 없는 점 ▲입고 있었던 옷옷들이 벗겨 없어진 점 ▲사망 추정 시간이 명확치 않은 점등을 들어 '수영중 사망'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에 체포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죽음을 '자살'로 규정한 채 사건은 흐지부지 되

고 힘겨운 싸움 속에 뚜렷한 성과 없이 이덕인씨는 다섯 달 가까이 냉동관에서 지내다 결국 4월 24일 장례식을 치게 된다.

② 경찰 과잉 진압에 따른 노수석 사망 사건

지난 3월 29일 '대선 자금 공개'와 '교육 재정 확보'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 과정에서 노수석(연세대 2년)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국 학생 고 노수석추모 및 김영삼정권 살인 폭력 진압 대책위」는 4월 2일 진상 조사 결과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전경들의 구타와 최루탄 피폭,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검거 위협 속에서 심폐기능의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 뒤 현정권의 살인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국민대회등을 통해 △김영삼정권의 심판 △경찰 책임자 처벌 △평화시위에 대한 살인 폭력 진압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김영삼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 촉구 △92년 대선자금공개와 교육 재정 확보 등을 요구하게 된다. 4월 8일에는 노씨의 아버지 노봉구씨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위 진압 지휘중대장등 상해 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평화적 시위에 대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야만적 체포 작전을 감행한 경찰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4월 13일 서울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노씨 최종 사인을 심장 이상에 의한 돌연사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심장조직등 정밀 분석에서 구타와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노씨의 목과 가슴 등에서 발견된 피하출혈 흔적은 심폐소생술 등에 의해 생긴 것"이라 결론 내린다. 하지만 부검결과 드러난 노씨의 의상부분 및 노씨의 구타 사실을 증언한 목격자 진술 내용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당시 시위는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시위였고 현재까지 경찰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국과수의 감정 증거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노수석씨의 죽음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③ 고애순씨 사산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된 여성 수감자의 처우 개선 촉구

작년 12월 4일 광주전남경찰청 보안 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임신 8개월에 구속되었던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 범민련 사건)씨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4일만에 태아를 사산했다. 그는 반국가 단체인 범민련에 가입, 활동했다는 혐의로 연행 구속되어 구속집행정지 때까지 약 2개월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고씨 사건을 계기로 여성·재야·인권단체들은 한겨울 임신부를 수감하고, 검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교도소 내의 여성 수감자의 모성 권리 보장 촉구했다. 또한 SOS-Torture등 각국 인권 단체들도 고애순씨 사건에 항의하며, 적절한 의료 조치 취할 것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형법을 국제법 수준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8) 여성

지난 5월 6일 새벽1시경 경기도 안산시 주택가에서 강순덕(34)씨 30대 남자에게 폭행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했으나 주민들 알고도 목살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죽음조차 방관하는 냉담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의 희생자는 어느 계층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 어린이 등이라는 생각이 든다. 올 상반기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살펴본다.

① 가정폭력방지법

한국 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발표에 따르면 연간 1만5천여 건의 상담 가운데 아내 구타 문제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51.21%가 아이들도 구타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해자중 50.6%가 구타 가정에서 자랐다는 통계는 가정 폭력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5월 2일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는 딸을 보다못해 동거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상희(73) 할머니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6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여성정책심의회를 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아닌 행정 조치를 통해 가정으로부터 퇴거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발표가 나가기 무섭게 정부는 가장 핵심 사안이 퇴거명령제를 삭제해 비난을 샀다.

② 성폭행사건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에 따르면 1-6월 성폭력상담 6백11건 가운데 성폭행이 3백8건, 성추행이 2백85건을 차지했다. 50.4%를 차지하는 성폭행을 보면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2백2건으로 일반강간의 33.1%를 차지했으며, 성추행의 경우도 일반 성추행 중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1백77건으로 29%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중 청소년 1백33명(21.8%), 어린이 1백34명(21.9%) 유아 69명(11.3)의 순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여학생 성추행, 성폭행사건은 경악을 떠나 공포감마저 들게 한다. 지난 5월에는 신양중학교 교장 황수연(55)씨가 여학생의 성추행 사건, 성폭행을 당한 뒤 두려움에 사실을 감춘 한 여중생이 결국 학교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지는 가하면, 소녀 가장인 초등 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20차례나 성폭행당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채 자살하는 사건 등등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터졌다. 그러나 이런 일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기 보다는 감춰진 일들이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폭력근절을 위한 인식개선등 다방면의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③ 정신대

지난 1월 24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어온 정신대 할머니들의 시위가 2백회를 넘어섰다. 지난 4년 동안 이들은 ▲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 규명 ▲정부의 공식 사과 ▲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배상 ▲범죄자 처벌 등을 주장해 왔다.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여성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씨가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책임질 것” 촉구하는 등 국제 여론이 강력해 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그저 사과만을 하고 있을 뿐 여전히 민간위로금을 운운하고 있다. 도츠카 변호사는 “현재 대만 정부는 일본을 향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민간 기금이 아닌 일본의 사죄와 확실한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도 더욱 강한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점에 정부는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일본 총리의 면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9) 기타

부산지법 형사1단독(배광국 판사)은 강주영양 유괴 살해 사건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경찰서 허금진 경장등 3명의 선고 공판에서 허씨에게 독직 폭행죄 적용해 징역1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법원의 고문 근절 의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95년 초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고문근절의지를 보였다지만 아직까지도 신문지상에는 ‘철야조사’라는 말이 버젓이 등장하는 데, 여기서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피의자 진술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6월 13일 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 뇌물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제기되었다. ‘과학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국립과학연구소와 진술에 의지하는 재판은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을 만들어 냈다.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재차 등장하는 김기웅순경 사건 당시 국과수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을 들어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요구하면 자살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6월 2일 새벽 2시 25분경 대구시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15층 옥상에서 정기 휴가 나온 이현우(육군. 20) 일병 이 병영 안에서의 폭행근절을 요구하며 자살했고, 다음날 서울 경찰청 제2기동대 이상범(19) 일경이 영내 기합 중지를 요구하며 자살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91-95년 5년동안 일어난 구타 사고는 모두 3천1백46건으로 연평균 6백29건 기록(사망 사건 26건)했다고 한다. 육군본부가 최근 발표가 91년-95년 범죄 통계를 보면 구타로 인한 사고가 92년 한 해만 줄었을 뿐 93년 5백86건, 94년 7백2건, 95년 9백93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에 2.7건의 구타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또한 5월 16일 정아무개(13)군동 10대 가출 청소년 6명 감금당한 채 불에 달군 연탄 집게, 작업용 연장 따위로 맞으며 일하다 탈출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의 인권은 안전한가.

1월10일 시민 오태근 씨는 수원 오산 파출소로부터 연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방광등 파열되었다. 그리고 6월 8일 한 시민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하다 폭행을 당했다. 동행을 요구하는 의경은 자신의 신분은 물론 동행 목적, 동행장소를 전혀 안박혔으며, 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 버렸고 관할 경찰서측은 폭행의경을 찾는 데 나서기는커녕 관내 소속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발뺌하기에 바빴다. 정부의 인권보호 의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① 학생 시위

노수석 씨의 죽음 이후 일련의 학생들의 죽음, 분신 사건은 학생들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낳았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항거하게 했을까.

지난 4월 7일 성신여대 권희정(총학생회 정책실장) 씨가 학자단식 끝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4월 16일에는 성균관대 황혜인(물리학과 95) 씨가 온몸에 신너를 뿌리고 분신 사망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여수수산대 오영권(21. 식품공학과 95학번) 씨가 “김영삼 타도! 미제 축출! 조국통일만세!”라고 쓴 글을 남기고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타살인지 자살인지 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 대구공전 동아리연합회 조직국장 박동학(92학번)씨가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다 숨졌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서 박승희 열사 등의 죽음으로 ‘분신정국’을 몰고 왔던 90년을 연상시킨 올해 사건들은 그 당시와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죽음이 현실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되지 못한 채 잠잠히 사그라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은 경원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② 경원대

학교 당국과의 싸움 5년째.

지난 3월 20일 현재 96년 들어 2명 제적, 6명 무기정학, 7명 고소 고발된 상태였다. 96년 학자 싸움의 도화선이 된 것은 장현구(당시 27세, 경원대 제적)씨 분신이다. 92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지낸 그는 학내 문제로 학교측이 학생회 간부 10여명을 폭력, 방화,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50여명을 무더기 중징계할 때 고소등 징계 조치 당했다. 같은 해 성남 경찰서에 연행되어 불법 수사를 받았고 그 뒤 감옥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으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분신 직후 성남 지역 재야 단체와 경원대 총학생회, 동문들을 중심으로 「사학비리, 경찰고문 희생자 고 장현구군 장례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과 고문 경찰, 당시 장씨를 폭행한 교수들의 보직 해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경원대 측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징계-> 고발-> 구속’의 악순환을 반복했을 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4월 6일 진철원(20·도시계획과 2년)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태는 악화되고, 총학생회 측은 전체 학생 투표 통해 전면 수업 거부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뒤로도 경원대측은 협상을 제기해 놓고도 고발하는 등의 이중

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5월 3일 현재 올해 만에도 학내 문제로 18명 고발, 17명 징계당했다. 휴업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폭력배까지 등장해 위영석 총학생회장 목뼈 부상을 입기에 이르렀고, 학생회 측은 '마지막 카드'인 재단비리 폭로를 베풀고 있는 등 최후의 일전으로 치닫고 있다.

3. 글을 마치며

앞에서 대략 살펴보았듯이 96년 상반기는 구체적 사안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기보다 아직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냉동관에서 5개월의 싸움 끝에 결국 이덕인씨 사인규명 작업은 시간 속으로 묻혀버렸다. 5년을 넘게 끌어온 경원대 사태는 소강도, 침체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잊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노 전직대통령을 16명의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세웠으나 물새뚝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는 때이다. 12·12, 5·18사건의 법정 규명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의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또한 이제껏 몇 년동안 거듭 싸워온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허용과 같이 진행될 것을 보이는 노동법 개악 움직임이 노·사·정간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97년 연말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해와 유사하게 공안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행될 탄압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바람에 따라 눕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풀잎처럼 강인하게, 서로의 허리를 부둥켜안고 내일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자.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기 총괄

유엔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제52차 회기가 6주간의 회의 끝에 4월 26일 폐회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85개의 결의문과 14개 결정 사항이 거의 합의로 채택되었다.

이들 조치를 통해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요구하였다. 즉 △개발권 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설치 △경제 구조 조정 프로그램과 그것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목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실무 집단의 창설 △무력분쟁속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강간과 성적 노예 및 유사 노예제 실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수자 차별방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가 특별 보고관을 임명할 것 △아울러 강제 퇴거에 관한 지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 것 등이다.

또한 부룬디(Burundi) 상황을 다룬 특별 회의에서는 부룬디에 파견되는 인권감시자의 수를 즉각 증원할 것을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촉구하였다.

위원회의 연차 회의는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주목한 점은 냉전 종식 이래의 경향인 국내 분쟁이 점점 더 민간인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권위원회가 존재해 온 50년의 세월에 걸쳐서 창출된 인권 기제들이 활발하게 적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적절한 정치적 맥락 - 민주주의의 맥락 - 속에서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호세 아얄라-라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다음 날 연설을 통해 냉전 이후시기에 있어서의 '오해라는 새로운 장벽'은 같은 국가 내의 여러 민족들이 상호 반목하도록 만들었고, 민간인에 대한 테러적 행위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심지어는 집단 학살(genocide)에 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위원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길을 찾지 않는다면 어렵게 쟁취된 인권의 진보가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선주민 문제'(Indigenous Issues)를 새로운 의제로 채택했고, 이 의제 하에서 매년 선주민의 인권문제가 토론될 것이다.

위원회는 적도 기니, 이란, 나이지리아, 구(舊) 유고, 쿠바, 이라크, 자이르, 수단, 아프가니스탄, 르완다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남부 레바논과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의안을 채택했다. 중국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불처리 동의안(no-action motion)을 채택함으로써 부결시켰다.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및 체첸 러시아 공화국의 인권사태 (the status of human rights)에 관한 의장 성명이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종주의의 현대적 형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權限; mandates)과 구(舊) 유고슬라비아의 실종자에 관한 특별 절차(special process)에 대한 전문가(Expert)의 권한, 이란 회교 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 사절(Special Representative)의 권한,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 적도 기니, 수단,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쿠바, 미얀마, 이라크 및 자이르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의 권한을 연장하였다.

이어 있는 회의들은 위원회의 여러 작업 집단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다. 여기에는 선주민(indigenous peoples)의 권리선언 기초를 위한 작업 집단, 인권 수호자의 보호에 관한 선언 기초 작업집단, 아동매매 및 성적 착취와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 Child)의 선택의정서 기초를 위한 작업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또한 소위원회의 선주민 인구에 관한 작업집단(Subcommission's 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회의를 2주간 더 소집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인권위원회는 4월 12일의 비공개 회의에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차드, 말리, 네팔, 사우디 아라비아, 시에라 레온, 슬로베니아, 타이 및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말리, 네팔, 슬로베니아 및 타일랜드에 관한 고려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원회는 자문 서비스 절차를 통해 캄보디아, 소말리아 및 아이티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 방안을 숙고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임명한 과테말라의 상황에 관한 독립적인 전문가(Independent Expert)의 권한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인권위원회는 토고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를 종결할 것을 표결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연례회의를 예년보다 일정상 늦게 가진 올해의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선언하면서, 연차 회기일이 해마다 3월과 4월이 되도록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53차 회기일도 1997년 3월 10일에서 4월 18일로 잡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폐회 성명

인권 담당 사무총장 보좌관(Assistant Secretary-General for Human Rights)인 이브라히마 폴(IBRAHIMA FALL)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50년 전 국제연합 창설의 길을 열면서 해산했던 바로 그곳, 새롭게 단장된 총회실에서 인권위원회가 폐회 모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비엔나에서 이루어 낸 합의의 정신으로 인권위원회는 결의와 결정의 90퍼센트를 합의에 의하여 채택할 수 있었다. 그는 특히 인권위원회가 개발권에 관련한 전략들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간 집단을 설치할 수 있었던 점을 환영했다. 그것은 주목할 만한 진보를 의미한다. 인권에 대한 분석과 인권의 목표들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도 포괄해야만 한다.

제52차 인권위원회의 의장인 길베르토 베르뉴 사보이아(GILBERTO VERGNE SABOIA-브라질)는 회기 동안 환영할 만한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표들이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고 정치 문제화시키는 정도를 낮추면서 가능한 한 합의에 도달하려고 대화와 협력을 지향했던 점이다. 인권위원회의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혼란스럽고 모순된 방식은 - 아마도 여타의 유엔 기구에서와는 달리 - 긍정적인 경향이 부정적인 경향과 공존해 있는 세계의 현실, 즉 편협한 인식과 냉혹한 거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합리적인 태도를 압도하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발권에 관한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한 것은 개발권 이행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기의 주요한 성과물 중의 하나이다. 기준 설정(standard-setting)과 감시 활동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위원회는 인권 측면이 정치적인 문제를 압도하게끔 하는 것을 위원회 활동의 주요축점으로 삼아야만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작업 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의제를 재정비하고 시간과 문서의 관리를 현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더 고려할 문제로 남아 있다.

국가별 인권 상황의 검토

세계 도처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 부룬디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일체의 위협을 비난했으며, 인권 침해와 폭력·협박 행위를 즉각 종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 나라에 파견되는 인권 감시자를 증원할 것

을 요구했다.

-- 적도 기니 정부가 그 지역 내의 모든 인종 집단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며, 수감자와 구금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적도 기니의 상황을 다루는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1년간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 이란 정부의 사법행정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재판전 구금과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 적법절차의 보장이 없이 계속되는 처형 그리고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이 관련된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특히 바하이교도(the Baha'is)¹⁾임을 이유로 한 소수자 차별대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특별 대표 사절(the Special Representative)의 권한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해서는 인권준수의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인신구속영장의 회복, 현재 구금되어 있는 정치범, 노조지도자, 인권운동가 및 언론인의 석방, 언론의 자유보장, 소수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권리 존중 보장을 촉구했다. 또 나이지리아에 조사 방문을 요구했던 두 명의 주제별 특별 보고관에게 제53차 회기에 공동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구 유고슬라비아의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모든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였고, 가증스럽고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강간 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니아에서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분노를 표현했다. 또한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협정 위반을 이유로 구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국제법정(International Tribunal)이 기소한 이들을 체포하지도 인도하지도 않는 데 대하여 분노를 표현했으며, 증인들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한편 기소된 사람들을 체포·구금, 국제법정 유치장에 인도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다. 데이튼(Dayton)에서 합의한 구성 조약(Framework Agreement)과 관련하여, 지난해 미국은 해명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의 추적 장치를 통해서 조약 당사국들이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 남부 레바논과 서부 베카(Bekaa)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민을 표적으로 한 포격을 즉각 중지하고 납치·투옥된 레바논 시민 모두를 석방할 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요구했다.; 학대와 고문으로 인해 일부 구금자들의 사망을 초래한 환경뿐만 아니라 구금자들의

1)[역주] 1863년 Husayn 'Alí(별칭 Bahá'u'lláh)가 세운 일파로, 모든 종교가 갖는 본질적 가치, 모든 인종의 융화 및 양성(兩性)의 평등을 주장함.

위생과 인간적인 조건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제적십자(ICRC)와 기타 인도주의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키얌(Khiyam)과 말자윤(Marjayoun)의 구금 시설들을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무라고 단언하였다.

-- 쿠바 문제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uba)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관한 수많은 보고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쿠바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언론 및 집회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assembly)에 대한 불관용(intolerance)에 각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수많은 사람들의 석방을 쿠바 정부에 요구했다.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수감중에 부적절한 의료 조치로 고통받거나 언론인이나 변호사로서의 권리를 방해 또는 부정당하였다.; 위원회는 1년 동안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 유엔 인권 기구 대표들과의 협력에 관한 결의문에서는 유엔 인권 기구 대표들에게 협력하거나 정보를 주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어떠한 협박이나 보복 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했다.

-- 정치적 수인 모두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그들 신체의 보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국민적 화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석방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Daw Aung San Suu Kyi)에게 이전(移轉)의 자유²⁾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민적 화해와 민주주의의 완성과 빠른 정착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그녀와 소수 민족 집단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여타 정치 지도자들과 실질적인 정치적 대화의 창구를 즉각 열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1년 동안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 이라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량적이고 극히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런 인권침해는 결국 아주 만연된 억압과 압제의 질서를 낳고 있으며 이런 질서는 광범하게 퍼져 있는 차별과 만연된 테러, 특히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 조직적 고문, 절단과 같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 및 사상, 정보,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의 탄압을 통해 유지되었다. 이라크 정부에게 쿠웨이트인과 다른 나라 국민들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고 이라크 당국에 억류된 기간 중 사망한 자의 가족들에게 적정 보상금(appropriate compensation)³⁾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

2)[역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 자유라고도 하는데, ①국내에서 어떠한 곳이라도 주소나 거소를 정할 수 있으며 여행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유, ②국외에 이주하고 국외에서 귀환하는 자유와 국외에 여행하는 자유, ③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의 귀화하는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 이라크 정부에게 유엔과의 협조 아래 '식량을 위한 석유'(oil for food) 협상의 결론에 도달하고, 군대 및 보안군의 행동을 국제법의 기준에 일치시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시켜 불처벌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무총장에게 이라크의 위기 지역에 대한 인권감시팀을 파견하고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자이레의 상황에 대해 개탄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 여성에 대한 폭력, 자의적 구금과 즉결 처형, 독방 감금,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감옥 조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감옥 조건은 특히 아동에게 그러하며, 무엇보다도 군대와 보안대가 관리하는 곳이 그렇다.; 강제된 실종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부정에 대해 개탄하였다. 아울러 위협적 조치와 보복의 책임자들, 특히 저명한 정치적 인사들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개탄하였다.;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차별 수단을 비난하였고,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동 매매 또는 약취 유인, 아동을 가족과 사회환경으로부터의 분리하는 것을 지원·묵인·권유 또는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책 또는 활동, 그리고 아동의 강제 수용, 사상 주입,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정책 또는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혐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그러한 정책 또는 활동을 즉각적으로 종결시킬 것을 수단 정부에 촉구하였다. 추가로 1년 동안 특별보고관의 권한 연장을 결정하고, 그의 보고 과정에 체계적으로 성(gender) 관점이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초(超)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현상과 싸우고 근절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의 종식을 보장할 것을 모든 정부에 요구하였다. 국제인권문서와 1984년 채택된 '사형수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경제사회이사회 보호 규정(Economic and Social Council 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의 관련 조항을 준수할 것을 사형미폐지 국가의 정부들에게 촉구하였다.

-- 카불(Kabul) 지역에 대한 로켓 공격을 포함하여, 민간인에 대한 무기 사용을 중지할 것을 아프가니스탄 분쟁 당사자들에게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뢰 부설의 중단과 아

3)[역주] 보상금이란 어떠한 손실, 훼손, 봉사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특히 입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을 말한다. 보상에선 정당 보상(正堂 補償, 또는 완전 보상, just or due compensation)과 상당 보상(相當 補償, reasonable compensation)이 있는데, 전자는 침해손해자의 이익을 존중하여 시가대로 모두 보상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익과 공익을 형량하여 적당한 기준에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 준(準) 전투원(para-combatants) 징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분쟁 기간에 실종된 이들의 운명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아프가니스탄 당국에 요구했으며, 1년 동안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 르완다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genocide)과 국제 인도주의법의 위반행위, 일체의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으며, 집단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고통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 지역이 르완다를 불안케 하는 전략지로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지역내 정부들에게 촉구하였다. 아울러 르완다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1년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문은 불처리 동의안(no-action motion)이 가결됨으로서 표결에 부쳐 지지 않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체첸, 이스트 티모르, 콜롬비아 및 라이베리아의 상황에 대한 의장성명을 승인하였다. 사이프러스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의제 항목 10(a)의 고려 사항으로 유지하고 53차 인권위원회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표결 없이 결정하였다.

러시아 연방의 체첸 공화국에 관한 성명을 통해, 민간인 도시와 촌락에 대한 폭격을 즉각적이고도 영구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민간인 이용 시설과 사회기간시설의 심각한 파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분쟁과 관련하여 구금된 모든 이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으며, 석방 때까지는 그들이 국제법에 따른 처우를 받아야만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스트 티모르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인권고등판무관의 이스트티모르 방문을 환영하고, 인권 분야에서의 기술적 협력 향상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당국과 이룬 동의를 만족스럽게 주시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위원회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해당 주제의 보고관을 초청할 의사를 포함한 장치들을 환영하였다.

콜롬비아에 관한 성명서에서는, 군사 법정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원이 처벌되지 않은 채 지속되는 실종과 고문 사건 뿐 아니라 생명권의 지속적인 침해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콜롬비아 정부에게 오용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 사법 제도에 대항하여 정규사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인권고등판무관에게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상설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이베리아에 관한 성명을 통해서, 위원회는 라이베리아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후

퇴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유엔 직원을 포함하여 외국민의 철수를 부득이하게 했던 무차별적인 생명 살상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위원회는 유엔 체계에 속한 유엔 회원국과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에게 인도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라이베리아에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팔레스타인 등 이스라엘 점령 아랍 지역의 인권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점령 아랍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였다.

-- 시리아 골란 (Syrian Golan) 지역의 물리적 성격과 인구구성, 제도적 구조, 법적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였다. 시리아 골란 지역의 성격과 법적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추진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는 무효이며, 이는 국제법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결정되었다.

--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재판없이 살해되고 구금되는 등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점령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랍의 여타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 점령한 아랍 지역에 이스라엘민을 정착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며 전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한 제네바 조약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요건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점령 지역에 어떤 새로운 거주자를 정착시키지 말 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하였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 치외법권적 영향을 가진 강압적 성격의 여타 일방 조치를 채택하거나 이행하는 일을 자제할 것을 당사국에 거듭 요구하였다. 이는 국가간의 통상 관계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인권의 충분한 실현을 방해하였으며 개발권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였다.; 그러한 조치들이 여타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력의 도구로 적용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 자국 관할권하의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참여하고, 단체 협상을 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호소하

였다.; 노동의 권리가 국내 또는 연방 법안에서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에 필요한 발의를 할지를 고려해 볼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였다.; 아동의 강제 노동을 제거하고, 아동의 노동 착취를 근절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였다.

--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독극물과 위험 물질, 폐기물의 불법 투기 비율의 증가가 해당국에 사는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계속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끼쳐 왔다는 점을 심각한 우려로 주목하였다.; 그런 생산품과 폐기물의 불법 이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와 기타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정부에 촉구하였다.; 국제 사회에 대해서는 독극물과 위험 물질, 폐기물의 국경 이동과 투기를 통제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에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극심한 빈곤과 소외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권유하였다. 극빈자들이 인고하고 생각하는 바를 알기 위하여 보다 나은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과 이 문제는 극빈자들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오는 견해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속해 온 노력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중요한 작업을 환영·장려하였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특수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세미나를 열 것을 유엔인권센터에 권고하였다.;

외채에서 야기되는 경제조정정책이 인권의 충분한 향유에 끼치는 영향, 특히 개발의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라는 틀 속에서 외채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외채와 외채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추가적인 부채 삭감 조치, 특히 공적인 부채나 이자의 말소 또는 부분 삭감의 필요성과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상업 부채와 다자간 부채의 긴급한 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인간 주거에 관한 제 2차 유엔회의(Habitat II)의 결론에 유념하면서, 개발을 이유로 한 퇴거와 관련해 인권을 위한 철저한 지침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Habitat II에서 한번 열린 바 있는 강제 철거 관행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적당한 날짜에 열 것을 위임한다는 것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53차 인권위에서도 인권과 환경의 주제를 계속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구조조정계획이 인권의 충분한 향유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결정에서는, 소위원회의 결의안에

주목하여 위원회는 시간·인원에 제한없는 실무집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실무집단은 구조조정계획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지침을 가다듬기 위하여 53차 회기에 앞서 회의를 갖는다.

개발권의 실현

개발권에 관한 결의문에서, 위원회는 포괄적인 개발 계획의 이행을 추구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였다.;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당사국이 이룬 발전과 단계에 관한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개발권의 이행에 기여할 만한 적절한 수단을 검토할 것을 유엔의 지역 위원회와 관련 조약 기구, 적합한 전문기구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개발권의 이행과 증진을 위한 전략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지역 집단과의 협의에서 지리적 대표성에 기초해서 임명된 10명의 정부간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족자결권

민족자결권에 관하여, 위원회는;

--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자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과 여타의 아랍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였다.

--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서사하라(Western Sahara) 정착 계획의 진전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우려하였다. 여기에는 동일화 과정(identification process), 행위 규약(code of conduct), 정치적 수인의 석방, 민중 전선(Popular Front) 군대의 해산 및 서부사하라 내의 모로코 군대의 감축 조정이 포함된다.; 정착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진정한 협력의 정신으로 유엔사무총장과 서사하라의 국민투표를 위한 유엔 사절단과 함께 일할 것을 모로코 왕국과 민중 전선에 요구하였다.

-- 중동에서 포괄적이고, 정당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 평화의 달성이 중동 지역에서 인권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팔레스타인 당국(Palestinian Authority)의 설치와 팔레스타인의 임시 자치 정부(Palestinian Interim Self-Governing Authority)의 선거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 사항에 대해 환영하였다.; 아울러 1996년 3월 13일 이집트의 샤름

엘-세이크에서 열린 평화건설자 정상회담(the Summit of Peacemakers)에서 채택된 선언을 지지하였다. 이 회담은 평화 과정 강화와 안보의 증진, 테러 배격의 목적으로 열렸다.

고문방지; 구금자의 권리

고문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구금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작업 집단에게 계속적인 정보 수집을 요청하였다.; 작업 집단의 활동에서 구금과 투옥간의 구별을 적절히 검토하여, 53차 인권위원회에 그 문제에 관한 검토 결과와 권고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작업 집단의 자료에 의하면 자의적인 자유 박탈 사례의 대부분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의 행사를 부당한데 근거한다는 점에 위원회는 우려를 표현하였다.

-- 구금된 유엔과 유엔 전문기구 직원에 관한 결의문에서는 유엔의 위임 하에 활동하는 직원과 여타 개인, 그들 가족의 권리를 존중할 것과 당사국 영토 내에서 이들의 보호를 보장하는 필수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거듭 호소하였다.; 유엔 직원과 전문가 그리고 그들 가족의 인권과 특권, 면책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앞서 말한 그들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는 권리의 완전한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모색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 몇몇 정부가 자국 내에서 강제된 실종 사례에 관하여 실질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개탄하였다.; 이에 그들 정부에 작업 집단이 전달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 정부가 가능한 한 속히 조치를 취할 것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실종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였다.

-- 인권과 법의학(forensic science)에 관한 결의문에서는 탈법적·자의적 처형과 즉결 처형의 효과적인 방지와 수사에 관한 편람(the Manual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에 규정된 부검 기준에 관한 의정서 뿐 아니라, 탈법적·자의적 처형과 즉결 처형의 효과적인 방지와 수사에 관한 원칙(the Principle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에 규정된 국제기준을 당사국의 규범과 관행에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 판사, 변호사, 검사,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소년사법문제와 관련된 여타의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사법 행정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하였다.; 법에 저촉된 어느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들의 존엄성과 욕구에 부합되는 방식의 처우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최후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를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였다.

--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방지에 관한 조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선택 의정서를 기초하는 작업집단의 보고서에 주목하였고, 선택의정서 기초 안의 1차 독회 결과를 환영하였다.; 시간·인원에 제한이 없는 작업 집단이 53차 인권위원회에 앞서 2주간 회의를 갖고 2차 독회의 시작을 비롯한 작업을 계속할 것을 작업 집단에 요청하였다.

--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니아,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 발생한 실종자에 관한 특별 절차를 위하여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관련 정부들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들 정부가 이들 영토내에서 발생한 모든 실종자에 관한 효과적인 수색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다. 고위 대표 사절의 권한으로 설치된 '유해 발굴과 실종자에 관한 전문가 집단'과 같은 맥락에서, 구유고에 관한 국제 형사 재판소, 고위 대표 사절, 국제적십자의 대량 무덤 발굴 작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한 작업 집단'의 구성원인 전문가들에게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서는 고문방지조약 10조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그 의무란 구금 장소와 여타한 형태의 구속, 구금, 투옥에 처한 사람을 수사하거나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는 것이다.

-- 모든 인질을 즉각적으로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질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대처하고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는 이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질을 취한 행위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다음 보고서에서 적절하게 전달할 것을 모든 특별 보고관들과 작업 집단에 촉구하였다.

--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몇 개의 정부간 기구와 국제 기구, 유엔 기구와 나눈 많은 의사 교환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계속해서 이런 경로를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에 관련된 기존의 기준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널리 전파하기로 한 특별보고관의 결정을 적절한 것으로 이해하며 주목하였다.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희생자를 위한 배상과 보상, 복권의 권리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해 이미 채택한 입법에 관한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 의사 표현의 자유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제공되는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사무총장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의사 표현의 자유권, 이와 연결되는 권리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자행되는 구금의 확대, 차별과 위협, 폭력과 학대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의 신장

위원회는 또한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관하여 해마다 고려한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 조정의 맥락에서, 인권 영역의 자문 서비스와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에 속하는 모든 활동에서 이 지역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엔 기금에서 보다 많은 자원을 할당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몽골,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아, 스리랑카 및 태일랜드 정부가 국내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취한 사전조치와 인도, 인도네시아 및 이란 정부가 국내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점을 환영하였다.

-- 올림픽 이상의 정신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올림픽 게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를 허락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하였다.

-- 현존 인권 기제의 이행과 영향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제출할 것을 정부들에 권하였고 관련 유엔 기구 및 기관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유엔의 전 조직에 걸친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강화함으로써 1998년의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주목할 것을 권하였다.

-- 필요하다면 HIV/AIDS와 관련되어 도입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법과 정책과 관행이 인권 기준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HIV/AIDS의 방지와 감염자 보호, 특히 여성과 아동과 취약 집단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하였다.; 모든 활동에 인권 요소를 강하게 주입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인권센터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세우고 유지할 것을 HIV/AIDS에 관한 유엔 합동 계획(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에 촉구하였다.

-- 인권 분야의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내 기구를 설치하고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의 원조 요청에 최우선 권을 부여하기를 계속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아울러 현존하는 자원 내에서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내 기구에 관한 4차 국제 워크숍을 소집할 것과, 가능하다면 이 워크숍이 96년이나 97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의 사무국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전체적인 정규예산내에서 인적·재정적 자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아울러 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가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53차 회기에서 현재의 결의문을 더 풍부화할 조치들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인권센터의 직원 구성을 점검하면서, 개발도상국 출신 인사의 선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과 평등한 지역적 배분을 보장하고, 이점에 있어서 특히 고위직, 전문직의 선발과 여성의 선발을 우선시 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 현존자원내에서 그리고 유엔인권교육 10년의 맥락에서 비엔나 행동 계획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하였다. 특히 국내 조건에 조응하여 회원국 내에 국내 행동 계획과 초점, 인권교육센터의 설립을 고무시키고 용이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 교육 10년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도와 수단에 관한 회원국의 견해를 구할 것을 인권고등판무관에게 권하였다. 아울러 53차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 문제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 강제 이주와 대량 탈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종적 및 기타 형태의 불관용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였고,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특히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였다. 사람들의 대량 방출을 낳은 모든 인권 침해의 확인에 효과적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도주의 영역에서의 조기 경보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체계를 통합하고 강화하는데 최우선 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할당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촉구하였다.

-- 모든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작업 집단의 의장들의 정기적인 회합을 좀더 소집할 가

능성을 고려해 볼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이는 의사 교환과 보다 밀접한 협력과 조정, 권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이다.

-- 모든 테러 행위와 그 방법과 실행을 비난하였다. 테러 행위는 그 동기를 불문하고, 그 모든 형태와 표현에 있어서, 어디서 누가 저질렀든지간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파괴에 목적을 둔 공격 행위로서 지역의 통합성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며, 합헌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불안케하며, 다원적 시민 사회를 손상시키며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 결과에 역행하는 것이다.; 테러리즘과 맞서기 위하여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고,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수집 노력을 계속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 여성의 동등한 지위와 인권을 유엔의 모든 조직 활동의 주요 흐름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인권위원회와 여성 지위에 관한 위원회간의 또한 인권센터와 여성발전국간의 협력과 조정을 좀더 강화할 것을 장려하였다.

-- 국가에 의한 것이든 사적 개인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를 삼가할 것과 여성폭력에 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합한 구제와 전문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이다.; 무력 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 비난하였고, 그런 행위를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위반으로 받아들였다. 특수 살인, 조직적인 강간, 성적 노예, 강제 임신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특히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세계에 걸쳐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솔선하고 있는 여성 조직과 민간단체를 지원할 것을 정부들에 요청하였다.

-- 국내 유민에 관한 사무총장 대표 사절의 보고 내용(E/CN.4/1996/52와 Add.1과 2)에 주목하였다.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의 관련 목적에 부응하여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보호하고 원조하기 위해 기울인 대표 사절의 특별한 관심을 환영하면서, 국내 유민의 보다 나은 보호와 원조와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권고하였다. 아프리카 단결 기구, 미주 기구, 유럽 안보 협력 기구와 같은 지역 차원의 정부간 기구와 대표 사절에게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다. 그 협력은 대표 사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시도를 통해 국내 유민의 보호와 원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들 조직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자 보호와 차별방지에 관한 소위원회와 관련된 인권위원회 활동

인권위원회에 속한 주요 기구인 소수자 보호와 차별 방지에 관한 소위원회의 작업에 관하여 위원회는;

-- 비상사태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비상사태를 선포, 확대, 종결한 국가의 명부를 수정·보완하는 작업과 비상사태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고려를 계속하자는 소위원회의 요청을 승인할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하였다.

-- 선주민의 유산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를 부록과 함께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전문기구, 선주민 사회와 조직, 정부간기구와 민간단체에게 보낼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하였다.; 이들 정부와 조직으로부터 받은 논평과 정보에 기초한 보충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할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하였다.; 특별보고관이 준비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모든 공식 언어로 출판되어 널리 배포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할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하였다.

-- 무력분쟁 기간 중 발생한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유사노예제 실시 상황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임무를 띤 특별보고관에 린다 샤베즈(Linda Chavez)를 임명한 소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였다. ; 무력분쟁 중 발생한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유사 노예제 실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적합한 유엔 기구와 전문기구, 지역적 정부간 기구와 민간단체에 요청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승인할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요청하였다.

-- 인구 이전의 인권 특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소위원회의 내년 48차 회의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소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하였다.

-- 국가와 선주민 인구간에 맺은 조약과 협정, 여타의 건설적인 조정의 연구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2차 진전 보고서를 선주민인구에 관한 작업 집단의 13차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올 47차 회의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소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하였다. 아울러 3차 보고서를 작업 집단의 14차 회의와 소위원회의 48차 회의에, 최종 보고서를 작업 집단의 15차 회의와 소위원회의 49차 회의에 제출하도록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의 전문가와 부위원을 선출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와 칼리비언 집단에서는 Miguel Alfonso Martinez, Marianela Ferriol

Echevarria(쿠바, 부위원); 아프리카 집단에서는 Mustapha Mehedi(알제리아); Ahmed Khalifa, Ahmed Khalil(이집트, 부위원); Halima Embarek Warzazi (모로코); 아시아 집단에서는 Ribot Hatano, Yozo Yokota(일본); Sang Yong Park, Myung Chul Hahm(대한민국); 동유럽집단에서는 Ion Maxim, Antoanella Iulia Matoc(루마니아, 부위원); Volodymyr G. Boutkevitch, Oleg V.Shamshur (우크라이나, 부위원); 서유럽과 여타 국가 집단에서는 Marc Bossuyt, Guy Genot (벨기에); Asbjorn Eide, Jan Helgesen (노르웨이); David Weissbrodt, Gay J. McDougall(미국)

소수자 권리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있어서 불가분적 요소인 관용과 다원주의에 관한 결의안에서는 인종·종교·언어 및 여타 집단간의 관용, 상호공존, 조화적 관계를 증진·강화할 것과 다원주의의 가치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비차별의 효과적 증진을 보장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민주주의와 관용과 다원주의를 손상시키는 모든 폭력 행위와 활동을 비난하였다.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결의문에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증진시킬 것을 회원국과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러한 권리에는 정치·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충분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권 자문 서비스

유엔의 인권 분야 자문 서비스 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는 후, 위원회는;

--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다당제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기능을 신장·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크메르 루즈(Khmer Rouge)가 계속 자행하는 인질 잡기와 인질 살인 등의 잔학 행위와 특별 대표 사절이 보고서에서 상술한 인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아울러 그 가해자들을 기소할 것을 캄보디아 정부에 요구하였다.; 심각한 형사상의 범죄에 있어서 군대와 여타 보안 세력의 구성원들에 대한 고소를 법원이 꺼려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캄보디아 사회의 대인 지뢰(anti-personnel land mines)의 무차별 사용이 끼치는 파괴적 결과와 불안정에 대하여 심

각한 우려를 표하였고, 그러한 일체의 지뢰를 금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 인권과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토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96년 3월 23일의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 지원 계획의 적절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을 토고 정부와 인권센타에 권유하였고, 토고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 민간단체 뿐 만 아니라 인권센타와 전문기구, 여타 유엔 조직 기구간의 협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좀더 검토할 것을 고등판무관과 인권 센타에 요청하였다. 인권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위한 자원 기금(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에 대한 기여금을 끌어들이고 증가시키기 위해 자문 기구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것을 신탁통치이사회에 요청하였다.

-- 전반적인 인권 감시와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 적절한 국내 구조를 만들고 강화하는 과제 속에서 회원국을 도울 목적으로, 인권센타의 협력하에서 유엔 안에 포괄적인 계획을 세운 바 있는 세계인권대회에 권고를 상기하였다.; 그런 점에서, 법의 지배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내 계획을 원조하기 위한 인권센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술적·재정적 수단의 획득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기를 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하였다.

-- 자의적 처형과 약식 처형,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소말리아에서의 인도주의자에 대한 공격에 관한 보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부응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효과적인 사법 체계의 부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인권과 인도주의법을 존중할 것을 소말리아의 모든 당사자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

-- 특히 시민 입법의 근대화와 판사와 국가 공무원의 훈련,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사법 개혁 과정을 계속 추진하고 강화할 것을 하이티 정부에 촉구하였다.

-- 법의 지배를 전면적으로 적용시킬 것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그 구성원과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정치적 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과테말라 정부에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인권침해의 모든 책임자들을 가리고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할 것을 과테말라 정부에 권고하였다.; 과테말라의 일반 국민과 특별히 선주민 사회의 요구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과테말라 정부와 과테말라 민족 통일 혁명위원회(URNG, 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a)에 요청하였다.

종교적 불관용의 제거

'종교 또는 신념에 기반한 불관용과 차별의 모든 형태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의 이행에 관한 결의안에서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위협하고 있는 종교적 극단주의가 야기한 폭력과 협박과 강압 행위 등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한 불관용과 차별의 심각한 사례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을 포함하여 일체의 종교적 극단주의로 야기된 모든 행위를 비난하였다.

인권 옹호자들의 권리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성에 관한 권리선언 기초에 관한 결의문에서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위원회에 초고를 제출할 것을 선언을 기초하는 작업 집단에 촉구하였다.; 선언의 초고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53차 인권위원회에 앞서서 또한 회기 중에 작업 집단에 적합한 회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결정하였다.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의문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위태로운 아동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거리 아동들의 곤경, 아동노동착취, 무력 분쟁속의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의 피해자인 아동을 비롯하여 아동이 위협에 처해 있는 특정한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특별보고관과 특별 대표 사절,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작업 집단에 권고하였다.; 또한 경제적 착취나 노동착취로부터 아동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와 관련,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른 선택 의정서 기초에 관한 결의문에서는 그러한 폭력의 위험스러운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모든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그러한 행위를 위해 존재하는 시장을 척결할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선택 의정서의 초고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계속할 것을 선택 의정서 기초를 위한 작업 집단에 촉구하였다.; 53차 인권위원회에 앞서 2주간 회합을 가질 것을 작업 집단에 요청하였다.

세계 인권 대회의 후속조치

유엔 체계의 인권계획 평가에 대한 결의문에서는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에 부응하여, 유엔 인권 프로그램 중기 계획의 조속한 채택을 위하여 현재의 수정제안문 검토를 계속할 것을 총회에 장려하였다.; 인권 분야의 책임있는 기구가 결정하여 세운 권한과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의 충분한 반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기구가 수정안을 책임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권센타의 재구조화 과정이 비엔나 선언과 인권 분야의 기구가 결정하여 세운 권한들의 충분한 이행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또한 강조하였다. 인권센타와 인권센타의 재구조화 과정이 주도하는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의사를 교환하기 위하여, 적어도 1년에 2번은 제네바에서, 모든 관심국가의 회합을 소집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거듭 요청하였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의 포괄적인 이행과 후속 조치에 관하여,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VDPA)'에서 유엔 헌장에 따른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적 존중, 준수 및 보장을 신장시킬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 프로그램, 인권 교육, 공공 정보 등을 통하여 VDPA를 공중에 널리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하였다.

선주민 문제

인권위원회는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기초를 가다듬기 위하여 53차 인권위원회에 앞서 10일간의 작업을 할 것을 작업 집단에 권고하였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선주민 조직에게 작업 집단에 참여할 것과 공인을 신청할 것을 장려하였다. '선주민 문제'라 명명된 의제항목하에 53차 인권위원회에서 작업 집단의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이들 조처들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의 기초를 장려하였다. '세계 선주민의 10년'의 주요 목표로서 선주민 권리선언의 채택과 유엔 체계 내에 선주민을 위한 상설 포럼을 창설할 것을 총회가 확인한 점을 환영하였다. 선주민 문제에 대한 선주민 스스로의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주민의 인적·제도적 능력을 강화할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세계 선주민의 10년'을 지지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선주민 개발 기금에 기부할 것을 정부들에게 권하였다.

선주민에 관한 소위원회의 작업집단 보고서에 관해서는, 소위원회의 48차 회기에 앞서서 작업집단이 5일간의 작업기간을 갖도록 공인할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하였다. 선주민 관련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를 계속할 것을 작업 집단에 촉구하였고, 작업 집단의 14차 회기에서 선주민과 건강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했던 제안을 환영하였다.; 정부와 선주민의 견해를 고려하여 선주민의 개념을 전달할 것을 의장직의 보고관에게 권고하였다.

유엔 체계내 선주민 상설 포럼의 주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포럼의 설치 문제에 관한 견해를 표시할 것을 정부들에 요청하였다.; 총회 결의 50/157에 따라 집행되어, 유엔 내에 현존하고 있는 선주민 관련 기제와 절차와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현존 자원 내에서 보장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아울러 그 결과가 51차 유엔총회에 앞서서 논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정부간 기구와 선주민 기구에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선주민 문제"로 명명된 의제항목하에 상설 포럼의 설치 가능성이 있는 맥락 속에서, 2차 워크숍의 개최 고려를 53차 인권위원회에서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작업 편성

위원회의 연례회기 날짜를 매년 3/4월이 되도록 재조정할 것을 투표없이 결정하였다. 따라서 53차 회기는 97년 3월 10일에서 4월 18일에 열리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현존하는 재정자원내에서 가능한한, 전액 지원받는 40개의 추가 회의를 공인할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하였다.

52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달리 지적된 바 없다면, 위원회가 설치하고 특별보고관과 특별 대표사절, 독자적 전문가, 작업 집단에게 부여된, 모든 지속적인 주제별 또는 국가별 위임 사항에 관한 보고가, 그 보고 의무에 관하여 관련 결의안이 명확히 언급했던 안했던 간에, 53차 인권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결정하였다.

임원, 회원

제52차 인권위원회 의장은 Gilberto Vergne Saboia(브라질) 씨였다. 부의장은 Emmanuel Mba Allo(가봉), Volodymyr Vassilenko(우크레인), Leonard Legault(캐나다)

였다. Rajamony Venn(인도)이 보고관 이었다.

1996년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알제리아,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쉬, 벨라루스, 베닌, 부탄, 브라질,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이보리,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프랑스, 가봉, 독일, 기니,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마우리타니아, 멕시코, 네팔, 네덜란드, 니카라과,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한국, 러시아 연방, 스리랑카,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공동번역=한국국제문제연구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5년 10월

(제501호 - 제515호)